

#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031
----------	------

제출년월일 : 2002.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동 조례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차입받아 개인에게 융자한후 상환자금을 융자자에게 받아 시에서 상환하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1. 5. 7일자로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을 완납하였으며, 향후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신규 사업 전망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 폐지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1. 20. ~ 1. 9.(20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

##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회계이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자본 및 부채는 안산시 일반회계의 관련 계정으로 이관한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문종화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경관담당 조주형
	담당자 성명·전화	조영일 (행정 2354)

##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발의자 : 안산시장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986.01.01 조례제0054호]

## 제0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측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측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통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업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측진법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농어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제02장 농어촌 주택사업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태화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지통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감독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용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지통개량사업

0 이 율 : 무이자

0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0 이 율 : 무이자

0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금

0 이 율 : 12%

0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0 이 율 : 무이자

0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융자금

0 이 율 : 무이자

- 0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용자금  
 0 이 율 : 무이자  
 0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3. 택지조성사업

- 0 이 율 : 무이자  
 0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④제3항제2호 가을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조치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 제2호 "나"내지 "마"목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응자사업종 할부 금상환이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응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제03장 시작영 시엔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세입세출) ①시작영 시엔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시작영 시엔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04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외국으로부터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 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애각대금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을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국민주택 기금의 응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조건에 의한다.

제13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응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할부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4조(융자금의 월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자체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가입 및 신용보증 준비금) ①지방자치 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응자지원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시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지 않고(거부할 경우 포함)본인을 수취인으로 할 경우 시장은 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기금 이외의 주택자금에서 차입하여 응자 지원한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주택은행법 제31조 및 신용보증준비금 관리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

## 제05장 보 칙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용규칙)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 응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②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기 응자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